



2016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일. 러. 두. 기

1

본 안내집은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와 관련된 사례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2

공무원은 본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직무 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안내집에서 ‘법’은 「공직선거법」,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공선 규칙’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약칭이며, ‘회답’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질의회답입니다.

5

본 안내집은 2016년 1월 현재의 법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I.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1
1. 선거중립 의무	1
2. 선거관여행위 제한·처벌 강화	1
II.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규정	3
1. 선거중립 의무	3
2. 선거운동 금지	10
3. 선거관여 금지	15
4. 당내경선운동 금지	19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1
6.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28
7.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30
III. 「정당법」·「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	31
1. 정당가입 금지	31
2. 후원회 가입 금지	34
IV.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36
1.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36
2.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38
참고자료	41



I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1 / 선거중립 의무

- 제헌국회의원선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는 경제성장 못지 않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여전히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고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올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내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지위와 책무는 선거에서의 중립을 그 기반으로 하기에, 공무원 스스로 모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위법한 선거관여를 철저히 차단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아름다운 선거를 이루어야 할 것임.

2 / 선거관여행위 제한·처벌 강화

-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 행위를 제한하며, 최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4년 초에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관여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공소시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내부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신설·개정되었음.



「공직선거법」 규정 신설 (2014. 2. 13.)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85①, §255⑤),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268③).



「국가공무원법」등 처벌규정 신설·개정 (2014. 1. 14.)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운동죄),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정치운동죄),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제15조의2(직원의 업무수행)·제18조(정치관여죄), 「경찰공무원법」 제31조(별칙),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 등을 신설·개정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례규정 신설 (2014. 1. 14.)

공무원이 선거관여 행위 등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선거관여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 공무상의 비밀누설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



II.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규정

1 선거중립 의무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입법 취지

- 선거법 제정 당시에 처음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의 선거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관위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움.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헌법 제7조), 자유선거의 원칙(헌법 제41조, 제67조) 및 정당간 균등한 기회보장(헌법 제116조)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며,
- 각급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임(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2 내용

가. 행위주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

-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경우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됨(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 공직선거법 외 다른 법령에서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이나 기관·단체도 여기에 포함됨.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 및 제65조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데 반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그들로 하여금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됨(헌법재판소 2008. 1. 17. 2007헌마700 결정).

나.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본 규정 금지행위의 대표적 예시이며,
-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행동하면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의미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또는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3 관련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가. 직무상 행위

-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 도로 개통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식, 회의 등을 개최함(07. 11. 15., 07. 11. 16., 09. 7. 16., 12. 3. 23., 15. 5. 12. 회답).

- 직무관련 특강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 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을 개최함(10. 4. 6., 12. 3. 2. 회답).

나. 언론홍보 등

○ 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 발표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정에 관한 특정현안에 대해 국민이해·의견수렴 위해 사회지도층 등에 선거운동 내용 없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함(96. 2. 2., 99. 11. 29., 00. 3. 7. 회답).

○ 정책 홍보

정부추진 정책에 대한 언론광고 등 정책을 홍보함(12. 2. 27., 15. 10. 8. 회답).

다. 정당관련 활동

○ 당정협의회 개최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른 정당과의 당정협의회나 정책설명회를 개최함(97. 8. 22. 회답).

○ 국회의원과의 지역현안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수렴한 의견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국회의원과 협의함(99. 6. 10. 회답).

○ 현황 설명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함(14. 4. 24. 회답).

○ 토론회 참석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전에 지역 문제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정책세미나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함(07. 11. 20. 회답).

라. 정치활동이 가능한 공무원의 정치활동

○ 입당 권유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입당이나 광범위한 당원의 모집에 이르지 아니하는 입당을 권유함(96. 2. 2. 회답).

○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직 겸임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대표자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함 (98. 7. 9., 08. 5. 27. 회답).

○ 정무직 비서관의 당원 대상 강의

정치활동이 허용된 대통령비서관이 특정 정당의 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하여 강의함(98. 11. 23.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가. 선거중립의무 위반

○ 여성후보자 지지 유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주무부서 장관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여성 후보자의 장점을 열거하거나 지방의회에 여성의 비율이 낮은 현실을 탈피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하여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을 유도함(06. 4. 27. 회답).

○ 국회의원 개최 주민간담회 참석

국회의원의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간담회에 현직 장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함(07. 11. 20. 회답).

○ 정당의 정책개발 간담회 참석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함(07. 6. 21. 회답).

○ 정책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함 (12. 10. 12. 회답).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특정 정당지지 발언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하고, 전국에 방송된 방송기자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함(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현직 장관이 소속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 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 △△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제창함(06. 2. 22.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 각 정당의 복지공약 재정소요 검토결과 발표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도자료 및 간부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원조달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제기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조세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공표함(12. 4. 5.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촉구).

○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지침’ 시달

정부부처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10개 산하기관의 직원에게까지 투표권유 등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1만여 산하기관 직원에게 이를 교육하게 함(12. 4. 13.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협조요청).

나. 선거중립의무 위반 우려

○ 장·차관들의 지역사업 예산지원 약속 발언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차관들이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업의 계속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을 함(08. 4. 4. 국무총리에게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등에 관한 협조요청).

○ 특정정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특강

주무부처 장관이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좋은 공문을 보내주겠다.” 등의 선거관련 지원 의혹을 사는 발언을 함(09. 7. 2. 공직선거법 준수 협조요청).

○ 국가기관의 장이 강연시 후보자선택기준 제시

국가기관의 장이 단체초청 강연에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를 호평하며 후보자선택 기준을 제시함(12. 10. 22. 공직선거법 준수 협조요청).

○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정인 지지 발언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연에서 대학생의 질문에 대해 “○○○이 나를 확고히 도와줬으니 나도 확고히 지원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국민들이 ○○○처럼 정당 밖의 인물을 원한다고 생각 한다”는 발언을 함(12. 10. 22. 공명선거 협조요청).

2 선거운동 금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1**입법 취지**

-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규정임 (헌법재판소 2008. 4. 24. 2004헌바47 결정).

2**내 용****가. 행위주체**

- 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정무직 공무원 제외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교섭단체의 전문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나. 금지행위 : 선거운동

-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6. 24. 2011도3447 판결).

3 위반 사례

○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94. 12. 22. 회답).

○ 직무상 행위 시 특정 후보자 등 지지·반대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나 직무관련 강의 과정에서 소속 정강·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함(99. 11. 29., 00. 3. 7., 10. 4. 6., 12. 3. 2. 회답).

○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 출마 예정인 제자들과 선거홍보용 사진을 촬영함(98. 4. 27. 회답).

○ 선거대책기구 참여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지방 자치단체장은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할 수 없음(12. 2. 24. 회답).

○ 공약개발 세미나 참석

국회의원의 입후보준비를 위한 선거공약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함(07. 11. 20. 회답).

○ 선거구민의 인적 사항을 후보자 측에게 제공

동사무소 직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기간 중에 평소 친분이 있는 △△△ 등 8명에게 전화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58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이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됨(서울지방법원 1999. 10. 28. 99도합851 판결).

○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관련 간행물 복사·배부

사립학교 교원이 주간신문에 게재된 “운동권 출신 주요 출마자”, “간첩사건 등 연루자 ○○당 출마” 등의 기사를 발췌·편집하여 A4용지의 양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50–60부를 제작한 다음, 교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성미통 위에 비치하고, 그 교회 장로에게 교부한 것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임(서울고등법원 2004. 10. 19. 2004노1868 판결).

○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지원 하에 ○○○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 대의원대회와 소속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당을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함(대법원 2004. 12. 23. 2004도7101 판결).

4 벌 칙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255①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선거운동(§254②)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3 선거관여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1 입법 취지

- 법 제85조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별칙규정이 없는 법 제9조와 대상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법 제86조를 보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법 제85조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행사를 통하여 선거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2. 21. 2005두13414 판결).

2 내용

가. 행위주체

- 제85조제1항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제85조제2항 : 공무원

나. 금지행위

-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85①)
-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85②)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직무와 관련하여’는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함(대법원 1969. 7. 22. 69도195 판결).
-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함(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096 결정).

▶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보조금·교부금 등의 교부, 용자의 알선, 물자의 불하, 계약의 체결, 사업의 실시, 허가, 인가, 검사, 감사 그 밖의 직무권한을 갖는 공무원 등이 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 유관 사기업체, 기타 관계단체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그 권한을 근거로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
- 공무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직무상의 지휘·명령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근거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선거에 즈음하여 투표를 권유하는 경우
- 우편·철도 기타 관공서의 창구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조사·우편배달 등으로 호별방문하는 직원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3 위반사례

- 예비후보자 등록 당일 오찬 모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 당일에 각 실·과·소장급 공무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모임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돌입합니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저를 다시, 동료이지만 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함 (대법원 2006. 12. 21. 2006도7814 판결).

- 공사의 감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 부탁

○○○○공사 감사가 자신의 비서를 통해 소속 직원 3명을 감사실에 개별적으로 불러 이들과 같은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사 내에서 감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의 내용, 소속 직원들을 감사실로 불러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할 때, 위 행위가 공직 선거법 제85조제2항(현 제85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1. 4. 28. 2011도1925 판결).

- 조합장이 직원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소개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행위

조합장이 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한 조합 직원들과의 회의에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을 소개 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조합장은 ○○○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직원인 △△△ 등이 ○○○로부터 명함을 받아 직원들에게 돌리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조합장은 조합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1. 20. 2010고합89 판결).

4 벌 칙

- 직무관련·지위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255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255③2.)
 - 5년 이하의 징역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죄의 공소시효(§268③)
 - 해당 선거일 후 10년
 -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4 /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행위주체

- 제57조의6 제1항 :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2. 선거운동 금지' 참조
 -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의6제1항에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2012. 5. 21. 회답).
- 제57조의6 제2항 : 공무원

2 금지행위

-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제57조의6①).
 - ☞ 당내경선이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을 말함(제57조의2①).
-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에서의 선거운동(제57조의6②).
 - ☞ '지위를 이용하여'에 대해서는 '3. 선거관여 금지' 참조

3 벌 칙

- 선거운동할 수 없는 사람의 당내경선운동(§255①1.)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255③1.)
→ 5년 이하의 징역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죄의 공소시효(§268③)
→ 해당 선거일 후 10년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1**입법 취지**

-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선거운동 제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05. 6. 30. 2004헌바33 결정).

2**정당·후보자의 업적홍보 등 행위(제86조 제1항)**

가. 행위주체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등

나. 금지행위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제1호)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4. 25. 97도320 판결).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참여,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제2호)
 -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 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096 결정).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임(대법원 2011. 2. 24. 2010도16650 판결).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 발표하는 행위(제3호)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제5호)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제6호)
 -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으로 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목상·형식상이나마 당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5. 8. 19. 2005도2690 판결).
 -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 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결정).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제7호)

다. 벌칙

- 상시 금지되는 행위(§86①1.~3.)의 위반(§255①10.)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86①5.~7.)의 위반(§256③1.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3**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제86조 제2항·제7항)**

가. 금지기간 :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제한(§86②3.)

○ 금지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 예외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
-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관련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행사에서의 지지연설

창당·합당·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또는 선거일 전 60일 전에 소속당원만 참석하는 정당집회에 참석하여 같은 정당 소속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03. 12. 11. 회답)

- 창당대회 축사

타 정당의 창당대회에서 의례적 축사(12. 10. 15. 회답)

- 정당 당사 방문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정당 당사 방문(96. 2. 29. 회답)

- 정당행사 참석

정당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의기관 회의 참석(12. 2. 10. 회답)

-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선거일 전 60일 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및 화환 제공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행사 의례적 방문시 지지연설

선거일 전 60일 이후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 방문 시 지지연설(03. 12. 11. 회답)

- 선거사무소 등 방문

선거일 전 60일 이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86②③.)

-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

선거일 전 60일 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승리를 기원하는 등의 축사

※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는 위법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자제

- 정당과의 정책협의회 참석

선거일 전 60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정당과의 정책협의회 참석(96. 1. 22. 회답)

라. 법 제86조제2항의 주체별 금지행위 및 벌칙

○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제4호)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법 제86조 제2항제4호 각목에 따른 경우에는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장(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제4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제2항제2호(정당의 정강·정책 홍보)·제3호(정당의 정치행사 등 참석)·제5호(통·리·반장의 회의 참석)의 행위도 제한됨.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255①10.)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 금지(§86⑦)

○ 금지행위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시기에 관계없이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벌칙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256③1.바.)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6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입법 취지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 자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관권선거의 폐해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구성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임(현법재판소 2008. 4. 24. 2006헌바43 결정).

2 제한 주체·내용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6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형의 집행유예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 제26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됨.

3 제한기간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7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1 입법 취지

- 선거와 관련된 범죄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에 따른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선거범죄의 원칙적인 공소시효기간을 일반 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짧은 6월의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 9. 27. 2012도4637 판결),
-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2 대상 범죄

-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

3 연장기간

- 해당 선거일 후 10년
-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III. 「정당법」·「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

1 정당가입 금지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 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 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입법 취지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나아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통하여 공무집행에서의 혼란의 초래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를 수호하려는 목적을 가짐(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

2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정보보조요원
-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국·공립대학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 사립학교의 교원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 ‘신분·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라는 등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이 있음.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례

- 「대통령특별보좌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통령특별보좌역(95. 1. 27. 회답)
※ 신분에 관한 별다른 규정 없이 대우를 장관 또는 차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원이 될 수 있음.
- 미수복지의 명예시장(02. 8. 6. 회답)
- 사립대학 총장(99. 10. 8. 회답)

- 한국은행의 임·직원(00. 8. 22. 회답)
-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01. 9. 28. 회답)
- 이북5도 중앙도민회의 회장(02. 9. 30. 회답)
- 통·리장(98. 5. 1. 회답)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장의 비서실장 · 보좌관 · 비서관 · 비서(07. 2. 2. 회답)
- 이북5도지사(98. 4. 11. 회답)
 -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이북5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
- 국무총리 공보실장(98. 3. 14. 회답)

3

별 칙

-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됨(「정당법」 §53).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2 후원회 가입 금지

▶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법 취지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와 그 취지를 같이함.

2 내용

-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
 -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으나(12.11.2. 회답 참조),
 - 후원회 회장은 될 수 없음(08.3.10. 회답).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 질 의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7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됨(2005. 11. 7.).

3 벌 칙

-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함
('정치자금법' §51③.).
→ 100만원 이하 과태료



IV.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1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선거범죄[제16장 별칙에 규정된 죄(제261조 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입법 취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헌법재판소 2010. 11. 25. 2009헌바57 결정).

2 대상 범죄

- 법 제16장 별칙에 규정된 위법행위
(§261⑨ 10배~50배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포함)
- 「국민투표법」 제13장 별칙에 규정된 위법행위

3 보호대상자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

4 보호사유

신고 등을 한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보호내용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신고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절차 및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 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촬영),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준용함.

○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선거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문답서·확인서 기타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선거 범죄 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 및 직업·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함.

○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누구든지(선관위 위원·직원 포함)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선거 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2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입법 취지**

선거범죄신고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선거범죄의 신고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선거범죄의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함.

2**대상범죄**

- 법 제16장 별칙에 규정된 위법행위
(§261⑨ 10배~50배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포함)
- 「국민투표법」 제13장 별칙에 규정된 위법행위

3**지급대상**

선관위에 신고한 자로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한 자

4**지급요건**

-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 협의자의 성명·주소, 위반일시·내용·장소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조사·조치한 경우
 - ☞ 금전·물품을 제공받은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전·물품을 제출하여야 함.
-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위법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

5

지급기준

- 공선규칙 제143조의4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선관위(읍·면·동선관위를 제외)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음.
-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음.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

- 공무원 내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소 1억 이상의 신고포상금 지급
- 누가 신고했는지, 누가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조차도 모르게 처리
-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신분상 불이익 없도록 조치



참고자료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18호, 2015.12.24., 일부개정]

-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1.1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5.10.6.] [대통령령 제26581호, 2015.10.6., 일부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실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34호, 2015.12.29., 일부개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畫)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1.1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국가정보원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948호, 2014.12.30., 일부개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친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 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4>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제15조의2(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4>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1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31조(별칙)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18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 살상의 위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제18조 또는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4>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군형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32호, 2014.1.14., 일부개정]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43호, 2015.7.24., 일부개정]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4.]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2016年 2月 日 인쇄

2016年 2月 日 발행

발 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TEL. 503-2095(대표전화)

인 쇄 명성문화
TEL. 2285-5125

《비매품》

